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2회 1차 정례회

# 검토 보고서

2023. 6. 13.(화)

| 검토 안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의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<br>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| 이한동<br>의원 외<br>14명 |



복지도시위원회  
(전문위원 장홍용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(안)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이한동 의원 외 14명
- 제안일 : 2023. 5. 23.
-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73)

## 2. 제안이유

-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·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책무(안 제3조)
- 나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수사·법률기관,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,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입법예고 : 2023. 5. 18. ~ 5. 23.(제출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이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북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·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
  - 안 제3조~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5조~제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을
  - 안 제7조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는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-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
  - 2018년부터 시작된 N번방 사건, 이를 모방하여 성 착취물을 공유했던 박사방 사건 및, 유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  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총 7,979명에게 상담·삭제지원, 수사지원 등 약 23만 건을 지원하였으며, 이는 전년 대비 약25%가 증가한 수치임.
  -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총 12,727건 중 불법촬영이 2,684건(21.1%)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불안 3,836건(30.1%), 유포 2,481건(19.5%), 유포협박 2,284건(18.0%) 순임
  -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, 또한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근거가 필요함.
- 본 조례안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,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서울시 자치구 6개구가 시행하고 있으며,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

# 참고 자료

## 1. 관련법령

### 여성폭력방지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여성폭력"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###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  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  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  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
  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  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  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**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**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0. 5. 19.>

**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**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“반포등”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20. 5. 19.>

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<신설 2020. 5. 19.>

**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**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“편집물등”이라 한다)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

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<신설 2020. 5. 19.>

[본조신설 2020. 3. 24.]

**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**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## 2.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

| 연번 | 단계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예방     | 디지털 성범죄 예방<br>'아이두 캠페인 운영'          |
| 2  |        | 초, 중학생 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운영               |
| 3  |        | 디지털 성범죄 종합 플랫폼<br>'온서울세이프'운영        |
| 4  |        |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운영                   |
| 5  | 조기개입   | 아동, 청소년 긴급 신고 상담창구 운영               |
| 6  |        | 고위험군 아동, 청소년 성착취예방 및<br>조기개입프로그램 운영 |
| 7  | 피해자 지원 |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<br>'찾아가는 지지동반자'사업 운영    |
| 8  |        | 초,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<br>재발방지 교육       |

### 3. 비용추계서

(앞쪽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

#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
제6조(피해자 보호·지원사업)

#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: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예산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
제6조(피해자 보호·지원사업)제①항 제3호  
(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)

※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,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 예산  
만을 대상으로 산정함.

[피해 영상물 삭제 및 법률, 소송지원, 심리치료 지원 등은 서울 디지털  
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수행 중(광역차원에서 진행 중)]

나. 비용추계기간: 2024. 1. ~ 계속

#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         | 연도    | 1차년도  | 2차년도  | 3차년도  | 4차년도  | 5차년도  | 합계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| 세입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소계(a)       |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|
| 세출          | 구비    | 5,000 | 5,000 | 6,000 | 6,000 | 6,000 | 28,000 |
|             | 소계(b)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
| □ 총 비용(a-b) |       | 5,000 | 5,000 | 6,000 | 6,000 | 6,000 | 28,000 |

##### 4. 재원조달 방안: 마포구 구비 전액 지원

##### 5. 덧붙이는 의견: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## 6. 작성자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방은영 |
| 연락처    | 02-3153-8923      |

##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
(아동, 청소년, 일반인 대상)